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066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30662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18가단1216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현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변론 종결 2021. 4. 28.

판결 선고 2021. 5.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18가단1216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 8. 12. 접수 제1920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분의 643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1,000분의 64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인용하였다. 원고는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소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2.경 대구 동구 D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에게, 설비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하여 주었다.

나. F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H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H 명의로 하되 원고가 H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C은 F에게 457,500,000원의, G에게 254,500,000원의 공사대금을 각 지급하지 못했다. C은 당시 분양가가 820,000,000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F과 G에 대물변제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I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5. 8. 12.과 같은 달 13.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86,462,922원을 H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해달라면서 그 돈을 J에게 전달해달라는 F의 요청에 따라 2015. 8. 13. J에게 현금 30,700,000원을 전달했고, J는 F의 동의하에 자신의 급여 3,100,000원을 공제한 27,600,000원을 R 명의 계좌에 입금했으므로, 원고는 F에게 30,7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F은 무자력 상태인데, C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G와 함께 이 사건 상가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여전히 C이다. F과 C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은 유효하므로 F은 C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F의 채권자로서 F을 대위하여 F의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C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

원고가 F에게 30,7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3. 원고 명의 계좌에서 30,700,000원을 인출한 사실, J가 2015. 8. 17. R 명의 계좌에 27,600,00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F의 요청에 따라 2015. 8. 13. 현금을 인출하여 J에게 전달했다거나 F에게 30,700,000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허이훈

판사김민지

별지

1) 원고는 제1심에서 F에 대한 36,766,555원의 자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다
당심에서 피보전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